

No. 49699

**Republic of Korea
and
Peru**

**Basic Agreement concerning economic,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eru.
Lima, 18 December 1981**

Entry into force: *5 July 1984 by notification, in accordance with article XVI*

Authentic texts: *Korean and Spanish*

Registration with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: *Republic of Korea, 6 July 2012*

**République de Corée
et
Pérou**

**Accord de base relatif à la coopération économique, scientifique et technique entre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et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du Pérou.
Lima, 18 décembre 1981**

Entrée en vigueur : *5 juillet 1984 par notification, conformément à l'article XVI*

Textes authentiques : *coréen et espagnol*

Enregistrement auprès du Secrétariat des Nations Unies : *République de Corée, 6 juillet 2012*

[KOREAN TEXT – TEXTE CORÉEN]

대한민국 정부와 페루 공화국 정부 간의
경제·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

대한민국 정부와 페루 공화국 정부 (이하 "채약당사국"
이라함)는, 양국 간에 존재하는 우호관계를 강화할 것을 희망하며,

평등과 상호 이익의 기초 위에서 양국 간 경제·과학 및
기술협력의 촉진이 공동관심사임을 고려하여,

본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.

제 1 조

채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테두리 내에서, 그들 각국의 현행
법령에 따라, 경제·과학 및 기술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적절한
조치를 취한다.

제 2 조

체약당사국은 양국 간 경제·과학 및 기술협력의 증진을
도모하기 위한 쌍방의 중장기적 사전 조치에 대한 상호 간의
이해를 촉진한다.

제 3 조

양국 간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, 체약당사국은
그들 각국의 국내법에 따른 경제·과학 및 기술협력사업의
수행을 위한 부속 약정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체결한다.

제 4 조

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기업의 입찰 참여를 용이하게
하기 위하여 양국의 투자 사업에 관한 정보 교환 및 사업의 금융을
위한 신용공여에 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하고, 또한 쌍방의 국내법에
따라, 상호 이익이 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한 합작기업의 구성을 도모한다.

제 5 조

체약당사국은 타방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투자를 지원 촉진하며,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상기 투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를 보장한다.

제 6 조

체약당사국은 양국 경제의 가능성, 필요성 및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상호간 교역을 증진하며, 이는 기존 또는 신규 생산품에 대한 중장기적 공급약정의 체결, 통상 사절단의 교류, 교역 촉진을 위한 신용공여 및 기타 적절한 방안을 통하여 시행된다.

제 7 조

체약당사국은 그들 각국의 경제적 잠재력에 유의하여, 특히 다음 공동관심 분야에 있어서 경제·과학 및 기술협력의 중요한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다.